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9(195~214)

『萬機要覽』"財用篇"의 지리적 해석*

손용택**

요약: 만기요람은 조선후기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국정운용 지침서로서 엮어진 책이다. 특별히 재용 편을 통해서는 당시의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다. 만기요람 재용 편에서 오늘날에도 중시되고 있는 비철금속 자원으로 금, 은, 구리, 납의 생산지 분포와 성쇠 및 종류별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농업지리 내용으로 연간 곡물 총생산량과 전답 및 전세(田稅) 부과와 그 기준 뿐만 아니라, 고금을 통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삼에 대해, 그리고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의 분포와 기능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소나무의 종류, 분포 및 봉산(封山)정책 등의 내용은 임업지리 관련내용이라 할 수 있다. 상업지리 관련내용으로 육의전(六矣廛), 시전(市廛), 평시서(平市署), 난전(亂廛), 향시(鄕市) 등 여러 장시(場市)의 종류와 북쪽 변방의 국경시장인 회령개시(會寧開市)와 경원개시(慶源開市)의 분포와 규모, 성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통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조창(漕倉)의 분포와 기능 등 다양한 당시의 지리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들 내용들은 현대 지리적 분류체계와 연결시켜 해석하여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지리정보들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나라의 임금이 비망록처럼 지척에 두고 읽는 책자 속에, 실용적 지리관련 지식과 필요한 정보들이 국왕의 국정운용에 직결되는 요체로서 정리되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어: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篇), 금과 은, 곡물과 경지, 봉산(封山)정책, 육의전, 조창(漕倉)

1. 서론

1) 『만기요람(萬機要覽)』편찬의 시대적 배경

『만기요람(萬機要覽)』11권은 조선 왕조 제 23대 순조 8년(1808년)경에 시임 호조판서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 심상규(沈象奎)가 함께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재용편(財用篇) 6권과 군정편(軍政篇) 5권으로 되어 있다. 재용편은 국가 재정과 경제의 제도와 실정 및 운용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고, 군정편은 국내 군사의 체제와 군정을 집행하는 각 기관과 여러 진영의 직장 기타를 서술하였고 아울러 경비 조달의 방법을 밝히고 있다. 당대의 상황과 옛날부터 내려온 연혁까지 밝혀서 요점을 간추려 놓았다. 이 책은 그 이름과 같이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는 군주가 일상 정무를 총람하고자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하여 비망에 도움이 되도록 한 책이다.[1)]

『만기요람(萬機要覽)』을 편찬함에 있어서 그 발의

* 본 연구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개인과제로 수행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發議)와 경과 등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을 왕조실록(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 중요한 사료에 기록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그 기사의 내용이 자세하거나 간략한 차이는 있으나 기사의 줄거리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2)]

만기요람의 편찬을 주재한 서영보와 심상규는 당시 학문과 식견이 조신들 중에서 탁월하였으며 명망도 높은 인물들이었다. 서영보는 영조 35년(1759년)에 나서 정조와 순조 대에 걸쳐 벼슬하였다. 명문에서 성장하였으며 정조 12년에 유학(幼學)으로 전강(殿講)에 수위(首位)가 되어 직부전시(直赴殿試)의 명을 받고 다음 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정조는 그를 곧 규장각검교(奎章閣檢校), 직각(直閣)에 올려 천부적인 재화(才華)를 더욱 연마토록 하였다. 그 후 승지가 되고 창원부사로 나가기도 하였으나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서 견문을 넓혔으며, 정조 23년에는 다시 규장각에 들어가서 정조의 어제문고의 정리 및 교정에 종사하였다. 이 때에 심상규와 같이 구관당상(句管堂上)이 되어 왕의 춘저시대(春邸時代)부터의 총 저술 191권의 교정을 완료하여 올렸다. 이것이 후일 홍재전서(弘齋全書)의 원고본이 되었다. 같은 해 24년에는 황해감사로 나갔다가 순조 4년에 경기감사로 옮기고, 또 곧 홍문관제학이 되었으며, 다음 해에 예조판서, 6년에 대사헌과 지중추부사를 거쳐 호조판서로 비국유사당상을 겸하였다. 동 8년에는 왕명을 받아 심상규와 만기요람의 편찬에 종사하여 불후의 대 저작을 완성하였다. 같은 해에 판의금(判義禁)을 거쳐 평안감사로 나갔으며, 다음 해 2월 문형권점(文衡圈點)에 수위로 추천되어 즉시 양관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중신(重臣)의 요청으로 관서의 민정이 중대하므로 그대로 기백(箕伯)으로 잉임(仍任)하라는 특명이 내려 그대로 눌러 있다가 다음 해 4월에 규장각제학으로 돌아와서 곧 이조판서로 있다가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내고 동 13년에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가 되었고, 동 6년에는 수원유수로 나갔으며, 그 후 세자좌빈객, 판돈령부사를 지내다가 그 해(1818년)에 58 세로 생을 마쳤다.[3)]

심상규(沈象奎)는 청송 심씨로서 영조 42년(1766년)에 태어났다. 자는 치교(穉敎), 호는 두실(斗室)이라 한다. 아버지 함재(涵齋) 심 염조(沈念祖)가 서적을 많이 수집하여 장서 수만 권을 가져서 국내에 유명하였다. 심 상규는 소년 때에 제자백가를 모두 섭렵하였다. 정조 7년에 18세의 소년으로 진사시에 올랐고, 동 13년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몇 해를 지나 규장각에 들어갔다. 동 21년에는 왕명을 받아 오륜행실을 편집하여 주자소 활인으로 찍어 반포토록 하였고, 그 후 서 영보와 함께 정조어제 홍재전서 초고를 편집, 정리하여 동 23년에 완료하였다. 순조가 즉위한 후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채지영(蔡趾永)의 탄핵으로 홍원(洪原)에 귀양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다음 해에 승지가 되고 동 3년에 대사간, 4년에 이조참판을 거쳐 5년에는 전라감사가 되었다. 6년에 이조참판으로 돌아왔으며, 동 8년에는 부제학으로 비국유사당상을 겸하였다. 이때 왕명을 받들어 만기요람의 편찬을 맡아 서 영보와 함께 완성 시켰다.[4)]

2) 연구목적과 내용, 방법

만기요람의 편찬목적은 군왕으로서 국가통치의 기본 틀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시 왕의 좌우에 두고 국정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만기요람은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국정운영의 지침서 격(格)으로서 엮어진 책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만기요람 재용편은 당시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지리관련 내용들을 추출하여 지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리내용과 연관된 내용들로서는 때로는 단편적이기도 하나 여러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귀금속자원으로서의 금과 은, 금속자원으로 동(銅)과 연(鉛), 농업 지리 관련 내용으로서 연간 곡물 생산의 총량과 전답 및 그에 대한 세수로서의 전세(田稅) 내용, 청나라에 인기가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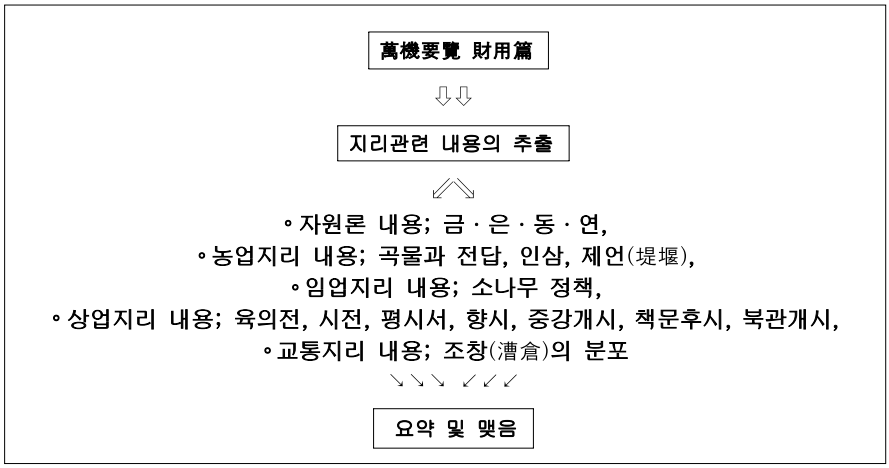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설계

던 인삼,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 임업지리 내용으로서 나라의 소나무 정책, 상업 지리 내용으로 육의전과 시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시(場市)의 종류와 북쪽 변방의 국경시장, 교통지리 관련 내용으로서 조창(漕倉)의 기능과 분포 등 다양한 내용들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재용편 6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전답에 대한 세입과 세출, 전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금속자원과 인삼 등 특산품의 대외적 이미지와 지명도, 그 밖에 나라에서 중시했던 국가재정과 관련한 여러 지리적 물산과 통계, 그들의 수요와 공급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왕의 국정운영 지침서 격인『萬機要覽』'財用篇' 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둘째,『萬機要覽』'財用篇' 을 꼼꼼히 읽어, 지리 관련 내용들만을 일일이 추출해 낸다. 셋째, 추출된 지리 관련 내용들을 자원론, 농업지리, 임업지리, 공업지리, 상업지리 등 현대 지리학의 분류체계에 맞게 재분류, 정리한다. 넷째,『萬機要覽』'財用篇' 에 담긴 이들 지리 내용들(지식)은 저자 두 사람의 의도와 통치권자인 임금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어떤 의미로 다가갈 지식내용들이며 영향력을 지닌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다섯째, 주제별로 분류,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상황에 왜 이와 같은 지리지식 또는 관련 사고체계가 필요했는가를 '지리적 관점' 에서 해석한다.

여섯째,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萬機要覽』'財用篇' 에서 담고 있는 "지리 관련 지식과 내용"에 대해 성격과 의미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자원론; 금과 은, 구리와 납

만기요람 재용편에 나오는 것처럼 금과 은, 구리, 납과 같은 주요 귀금속 및 금속자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이 컸던 금속들임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 기록에 의하면 금은 일찍부터 국내에서 채금하는 일이 없고 매번 사행(使行)에 돈을 보내 사오도록 하였다. 후에 자산(慈山)에 금광이 발견되어 금가루 생긴 모양이 외씨와 같으며, 사람들이 몰래 채취하였다. 숙종 32년(1706)에 호조에서 임금께 보고 올리고 각 관아의 당하관을 보내 자세히 조사하여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세금을 거두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폐지되었다. 그 산출량이 미미하여 계속해서 징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였던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해 송도(松都, 지금의 개성)의 어떤 사람이 강화의 남면(南面)에 금맥이 있다하여 호조에서 별장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채취하여 몇 냥을 얻는데 그친 일도 있다. 금이 난다는 소문이 나면 해당지역에 금점(金店)을 열고 세금 거두는 일이 시작되었다. 정종 4년(1780)에 성천(成川)의 금을 채취하고 갑인 년에 수안(遂安)의 금을 채취하였으나 잠깐 하다가 곧 정지되었다. 정조 23년(1799)에는 채금하는 일이 수익성에서 별반 실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번거롭게 하는 일들이 방해만 되므로 금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만기요람이 집필될 무렵에 와서는 경기지방, 호서지방, 관서와 해서지방, 관동지방, 관북지방 등의 6도에 금맥의 발굴이 점점 성하여져서 도처에서 두루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지역에서 몰래 채취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귀금속을 모으고 감추어 모리(牟利)를 취하는 보장(寶藏)들의 몫이 되는 일들이 흔해지면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순조 6년(1806)에는 호조에서 나라에 품지(稟旨)하여 가장 채금이 왕성한 관서 수개의 읍에 시험 삼아 실시하였으나 1년이 못가서 각 아문에서 문제가 생기고 민폐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신(大臣)들이 나라에 연주(筵奏)함으로써 결국 조정에서는 이를 철폐토록 하고 영구히 개설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기요람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채금역사의 성쇠실정이 대개 이러했다.

한편, 금의 분류는 최상을 '10품금'이라 하고 또 '엽자금(葉子金)'이라고도 했다. 제련하였으나 정하게 되지 못한 것을 '괴금(塊金)'이라 하고, 제련하지 아니한 것을 '쇄생금(碎生金)'이라 하였다.[5] 오늘 날 금(金)의 순도 최상 치를 24K로 하여 나누는 분류 방식과는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은(銀)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겨, 국외 반출에 엄격하였다. 일찍이 국초에는 은화(銀貨)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역관(譯官)이 연경(燕京)에 갔다가 사사로이 가지고 강을 건너면 그 죄가 사형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에 중국에서 은(銀)을 들여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군량을 마련하고 군상(軍賞)을 수여할 때에도 모두 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은화(銀貨)를 비로소 통용하기 시작하였다.

선조 때에 나라에서 사용하는 은(銀)이 바닥날 즈음, 어사(御使)를 단천에 특별히 보내어 은(銀)을 채취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납과 민역(民役)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은(銀)을 공납하도록 유도하였다. 효종 2년(1651)에 호조에서 조정의 명을 받아 민간인들에게 은을 채취하도록 하되, 관(官)에서 파주, 교하, 곡산, 춘천, 공주 등지에 은점(銀店)을 설치하고 사람을 모집하여 채취(採取)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합당하게 채은(採銀) 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6] 숙종 정묘년에 호조(戶曹)로 하여금 은점(銀店)을 전담 관할하도록 하고 별장을 파견하여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하였다. 이때부터 은점(銀店)이 여러 도(道)에 두루 설치되어 전(임진왜란)후에 설치한 것을 합하면 68개 읍에 이르렀다. 이 후로 계속되는 채취로 은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세금의 징수가 한결같지 않았다. 따라서 은점(銀店)의 존립과 철폐가 무상하므로 영종 을미년에 호조에서 나라에 품하고 명을 받아 남아있는 은점(銀店)들을 관에 부속시키는 한편 세액을 정하여 상납토록 하였다. 그렇게 하던 과정에서도 여러 도(道)에서 사정이 각기 다른 은점(銀店)들의 의외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보고되므로 이들을 더욱 축소하거나 철폐시키고 소수의 은점(銀店)들 만을 남겨 놓게 되었다. 만기요람이 집필될 무렵에 이르러는 은맥의 쇠잔함이 과거에 비교해서 더욱 심해졌고, 세금 납부의 부담, 은점의 관리 등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의 고충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폐단의 양상이 다단(多端)함으로 정종 무오년에 이르러서는 은점(銀店) 신설을 금지하였다.

은의 분류는 호조(戶曹)에서 직접 관여하여 하였으며, 그 기준에 네 가지가 있다.[7] 천은(天銀), 지은(地銀), 현은(玄銀), 황은(黃銀)이 그것이다. 천은(天銀)은 임금께서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때 쓰이고, 지은(地

銀)은 임금의 명령을 따라 중요한 일의 예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현은(玄銀)과 황은(黃銀)은 제반 경용(經用)에 사용함으로써 각기 그 용처를 달리했다. 1년에 총 수요량을 기준으로, 공급량이 소비량을 당할 수 없게 되어, 천은(天銀)과 지은(地銀)은 특별한 가격을 주고 마련하였다. 즉, 백목전(白木廛, 일명 면포전) 장시(場市)를 열어 마련한 돈으로 양질의 은(銀)을 사서 제련하도록 하여 용처에 제 때에 닿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8)]

한편, 동(銅)과 연(鉛)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만기요람에서는 중요한 금속으로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구리는 산출되었지만, 그 제련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소비되는 양의 대부분을 순전히 왜동(倭銅)에 의존하였다. 구리의 생산은 영조 신유년에 비로서 수안(遂安)과 영월의 동을 채취하고, 그 뒤에 보은과 안변의 동을 채취하였으나, 제련한 동(銅)의 품질이 왜동(倭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정조 을사년에 호조(戶曹)에서 주전(鑄錢)할 때에 안변의 영풍동(永豊銅)을 섞어 써서 이 뒤부터는 구리 동전을 만들 때에는 영풍의 동(銅)을 늘 섞어서 사용하게 되었다.[9)]

연(鉛)은 본래 은점(銀店)에서 제련 시에 분류하여 함께 나오는 것이므로 숙종 12년(1687)에 호조(戶曹)로 하여금 은점(銀店)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은(銀)은 호조에 상납하고, 연(鉛)은 그 세수(稅收)되는 액수를 계산하여 각 군문(軍門)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다.[10)]

3. 농업지리; 곡물과 전답, 인삼(人蔘), 제언(堤堰)

곡총(穀總)이란 한 해 동안 국고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총 수량을 말한다. 당시 조선왕조 국고 수입의 총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곡총은 농산물의 풍흉에 따라서 그 수량도 일정하지 않았다(延正悅, 1998, p.9). 나라 전체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분포하는 밭(旱田)과 논(水田)에 대한 현황 통계를 만기요람에서 볼 수 있다. 이들 논과 밭의 면적과 비율을 계산하면 각 지역별 생산성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지리적인 가치가 있다.

1) 국고(國庫)의 곡총 (穀總)

19세기 초 조선왕조 후기 곡총(穀總)은 쌀을 비롯한 모든 잡곡들을 아울러서 9,995,599석으로 총계를 잡고 있다.[11)] 약 1천만 석에 이르는 전국의 곡물 총량이다. 조정에서는 국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 도별로 매년 전답으로 사용하는 땅을 일일이 해당 읍과 면에 등록하도록 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면 조세의 반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12)]

조선왕조의 국가경제는 농산물의 풍흉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매해 들쭉날쭉한 농산물의 작황은 국가 경제 및 서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해마다 농산물의 소출량이 달라 백성들이 고생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환총(還摠)의 제도를 두었다. 중앙관사에는 대창(大倉), 지방관아에는 소창(小倉)을 각각 설치하고, 이 대창과 소창을 근간으로 해서 각 고을별로 미곡 및 잡곡을 보관하였다가 춘궁기에 주민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었으며 그해 가을 추수기에 받아들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만에 하나 각사(各司) 창고의 미곡과 같은 관곡을 사사롭게 반출하거나 횡령하여 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 무기정배에 처하였다(延正悅, 1998, p.9).

매년 초에 호조의 낭관(郎官)은 감찰과 함께 각사(各司) 창고의 재고를 조사하여 왕에게 그 상황을 아뢰도록 하였다(延正悅, 1998, p.9). 경외(京外)의 전곡(錢穀) 회계문서는 한양의 각 관사(官司)에 춘, 하,

추, 동 4계절 첫 달인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지방에서는 매년 음력 2월 15일에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풍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비싼 값에 미곡 따위를 사들여서 보관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싼 값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는데(延正悅, 1998, p.9), 이러한 제도의 원리는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도 70년대까지 시행했던 고미가(高米價)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2) 전국의 전답(田畓)

19세기 초의 전국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의 원장부(元帳簿) 전답(1807년, 순조 연간) 기록에 의하면, 밭이 전체 경지의 63.7%로 논보다 많았다. 논과 밭을 합한 경지면적이 가장 많았던 곳은 호남지방(23.3%)이며, 이곳은 논이 전체 경지의 53.7%를 차지하여 전국적으로 논 면적이 밭 면적을 능가하는 유일한 지방인 동시에 논밭을 합한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최대인 곳이기도 하다. 당시 전국의 8도(道) 4도(都) 가운데 논이 밭보다 많은 곳으로는 호남지방 뿐인 셈이다. 곡창지대로서의 호남지방이 평야가 넓고 논이 많은 전통은 일찍이 과거부터 인식된 일임을 알 수 있다. 국가 전체의 밭 면적 927,602결 가운데 영남지방이 20% 이상을 차지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호서(17.4%)와 호남(17.0%) 지방이 다음을 잇는다.

관북(11.9%), 해서(11.5%), 관서(10.7%) 등의 지방은 차례로 밭 면적 비율 10%를 상회하면서 뒤를 잇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강원도에 해당하는 관동지방은 밭 면적이 전국 대비 3.6% 정도에 머물렀다. 관북과 관동 지방 등은 교통의 발달이 미진했던 당시에 경지개발 및 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뒤졌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논이 가장 많은 곳은 호남지방이다. 전국의 전체 논 면적 528,990결에서 34.5%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논 경지를 가진 지역이다. 그

표 1. 각 지역 별 밭(旱田)과 논(水田)의 분포

(단위; 결/비율,%)

분류 / 지역	밭(旱田)	논(水田)	계
경기(京畿)	52,414 (5.7%)	32,553 (6.2%)	84,967 (5.8%)
호서(湖西)	161,243 (17.4%)	95,285 (18.0%)	256,528 (17.6%)
호남(湖南)	157,394 (17.0%)	182,709 (34.5%)	340,103 (23.3%)
영남(嶺南)	191,013 (20.6%)	146,115 (27.6%)	337,128 (23.1%)
해서(海西)	106,580 (11.5%)	25,631 (4.8%)	132,211 (9.1%)
관동(關東)	33,435 (3.6%)	7,716 (1.5%)	41,151 (2.9%)
관서(關西)	98,923 (10.7%)	20,712 (3.9%)	119,635 (8.2%)
관북(關北)	110,276 (11.9%)	7,470 (1.4%)	117,746 (8.1%)
수원부(水原府)	6,426 (0.7%)	5,395 (1.0%)	11,821 (0.8%)
광주부(廣州府)	4,109 (0.4%)	1,749 (0.3%)	5,858 (0.4%)
개성부(開城府)	2,724 (0.3%)	1,289 (0.2%)	4,013 (0.3%)
강화부(江華府)	2,605 (0.3%)	2,366 (0.5%)	4,431 (0.4%)
계	927,602 (100.0%)	1) 528,990 (100.0%)	1,456,592 (100.0%)

주) 萬機要覽 財用篇 2 田結, 八道四都元帳簿田畓, 필자 재구성.

다음 순으로 영남(27.6%)과 호서(18.0%) 지방이다. 이들 호남, 영남, 호서 지방을 제외하면 지방 별 논의 소유면적 비율은 괄목할 만한 곳이 없는 셈이다. 전국의 논과 밭을 모두 합한 1,456,592결에서 논의 비율은 36.3%에 불과하여 밭에 비해 열세한 편이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경지를 개량하여 논으로 삶아내는 기술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논과 밭을 합한 총경지면적비로 보면, 호남(23.3%), 영남(23.1%), 호서(17.6%) 지방 등이 상위권 지역들이다. 결국, 당시에 밭 면적이 넓은 지방은 영남, 호서, 호남이고, 논 면적이 넓은 지방도 호남, 영남, 호서이며 논과 밭을 합한 순위는 논 면적 순위와 같다. 논과 밭의 면적에서 그 순위의 순서만 다를 뿐, 19세기 초 조선왕조의 전국 경작지 면적비로 볼 때 이들 호남, 영남, 호서의 세 지방이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들임을 알 수 있다.

3) 풍흉에 따른 전세(田稅)

전세(田稅)의 수세(收稅)는 당시 각 지방 별 농작물 생산성의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육운, 조운의 활발함과 편리성은 당시의 지리적 접근성과 소통의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농작물의 풍흉에 따라 매년 정하는 전세(田稅)의 비율을 연분(年分)이라 한다. 연분 하는 기초로서 농작물의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였는데, 영재(永災)[13]와 당년재(當年災)가 그것이다. 영재(永災)에 속하는 예는 천(川)변 전답이 유실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당년재(當年災)에는 그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처음부터 파종하지 못한 것, 이앙(移秧)하지 못한 것, 이앙의 때를 잃은 것, 전혀 낫을 대지 못한 것, 이삭이 패지 못한 것, 병충해로 산출량이 감손된 것, 말라서 산출량이 감손된 것, 서리의 재해를 입은 것, 우박의 재해를 입은 것, 해일의 피해나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것 등이다. 결국, 영재(永災)란 복구가 힘들어 세금징수의 원천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 반해 당년재(當年災)란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기초로서의 토지는 이상이 없지만, 연중 절기에 따른 영농 시점을 놓치거나 각종 기상재해를 입어 손해를 보게 됨으로써 감세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연분사목(年分事目)[14]을 지시받고, 각 읍의 수령이 몸소 일차로 현장 들판에 나아가 조사하여 도(道)의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다시 보고 자료를 검토하여 도내(道內)의 각 읍을 나누어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려, 곡식이 일차로 조금 먼저 익은 것을 '초실(稍實)'로 잡고[15], 농작물 경작에 재해를 당해 손실된 것은 '우심(尤甚)'으로 잡았으며, 중간 수준은 '지차(之次)'로 하여 읍에서 보고한 재결(災結)을 모두 모아 연분(年分) 급을 정한 것들과 비교한 뒤에 읍을 배정하여 양급(量給)하고 연분의 성책(成冊)을 마감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4) 연행사신(燕行使臣)과 인삼(人蔘)

연행사신이란 청나라에 파견하는 사절단을 이르는 말이다.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는 청나라 조정에 매년 원단사(元旦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 동지사(冬至使) 등 네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16]

사절단의 파견은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각 1인과 그 수행원 30명 그 밖에 군관과 직계가 낮은 하급관리들이 따라 간다. 이들 외교사절단은 외교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조공무역(朝貢貿易)인 공무역(公貿易)을 행하게 되며, 이 사절단을 따라가 사무역(私貿易)을 행할 사무역 업자(私貿易業者)들이 따르게 된다(延正悅, 1996, pp.474-475). 이들은 조정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자들로서 수입품은 조정과 조정 대신들에게 제공되며 육의전(六矣廛)을 통해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거래하게 된다(黃大錫 · 延正悅 1978, 經營史;韓國經營史槪說, 서울; 세영사, p.58).

사절단 일행들은 당시 지정 통화인 은(銀)대신 삼

(蔘)을 소지하여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노자(路資)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절단 일행들에게 지정 통화인 은(銀)의 지참을 금한 것은 당시 은(銀)의 생산량이 적었던 조선(朝鮮)의 조정(朝廷)에서 충분하지 않은 국고(國庫)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은(銀)대신에 삼(蔘)을 소지해 가지고 가서 그를 팔아 노자(路資) 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미루어 보면, 당시 청나라에서는 고관대작이나 상인, 또는 일반사람들 조차도 당시 조선에서 생산한 삼(蔘)을 매우 귀한 귀중품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延正悅 1998, p.11). 오늘날에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인삼이 '고려 인삼'으로서 인기를 누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음을 볼 때 그 이름값의 역사는 고금을 통해 매우 오래전부터 얻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17]

청나라 초기에는 조선의 사절단 일행 한 사람 당 인삼 소지한 양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청나라의 수도 연경(燕京)에서 사절단원 일행들의 쓰임새가 커짐에 따라 인삼의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무작정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므로 나중에는 일인당 10근 8포씩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 허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말이, 연행사신들이 일인당 삼(蔘) 10근 8포씩을 보유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연행8포(燕行八包)"라고 하였다.[18]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있음에도 막론하고 청나라의 연경에 파견되어 가는 사절단 일행 가운데에는 '연행팔포'의 인삼 보유량을 넘어서서 법정한도를 위반하고, 인삼을 별도로 은닉하여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 이처럼 삼을 은닉하여 출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어 엄벌하였다(延正悅, 1998, p.11).

사신들의 행차에서 돌아와 밀수(密輸) 금물(禁物)의 사적재물(私的財物)로서 잠상행위(潛商行爲)가 적발되면 이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정배(定配) 조치하였다(續大典 刑典 禁制條). 그리고 이와 같은 밀수 금물의 반입을 사전에 막지 못한 국경의 관문책임을 진 의주부윤(義州府尹)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 시켰다(續大典 刑典 禁制條).

5)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

수리(水利)는 농업의 성취에 가장 관계 깊은 일이다. 그리고 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곧 제언(堤堰)이다. 물길을 끌어들이고 둑을 쌓아 새지 않도록 하며 적정 시기에 농토에 물을 대어 농작물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농사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수리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곧 농업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그에서 얻어지는 이익창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요소가 된다. 만기요람 재용편에서 이러한 수리사업의 긴요함을 언급하였다. 당시의 정부당국에서 특별히 중앙에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각 도(道)의 제언을 관리하게 하여, 물길을 트고 둑을 쌓는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관리하였다(延正悅, 1998, p.14). 만기요람 재용편에 의하면. 중간에 그 관제를 파하였다가, 현종 3년(1662년)에 예조참판 조복양(趙復陽)이 건의하여 다시 설치하고, 삼공(三公)과 호조판서, 진휼청 당상으로 하여금 제거(制擧, 提調)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영조 6년에 비국(備局)에 예속시키고, 8도(道)와 3도(都; 광주, 수원, 강화) 및 개성부(開城府)에서는 매년 그 관내 지방의 둑(堤), 보(洑), 동(垌)의 크기(가로 및 세로 또는 동서남북의 넓이) 등 이름과 내용들을 적어 보고하고, 그것을 표시한 지역의 범위 안에서 몰래 농사짓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이를 범하는 자는 장(杖) 80으로 죄를 다스리고, 불법하게 얻어진 이득은 관에서 몰수하도록 하였다.[19] 봄과 가을에 때를 정하여 제언을 수축하되, 비록 폐언(廢堰)이라도 특별한 지시가 따르지 않은 경우에 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이름이 알려진 제언에는 홍주(洪州)의 합덕제(合德堤), 함창(咸昌)의 공검지(恭儉池), 김제(金堤)의 벽골제(碧骨堤), 연안(延安)의 남대지(南大池) 등이 있었다.[20]

당시 각 도의 둑[堰]과 보(洑)를 보면, 경상도에 둑

이 1,765개 있었고 그 중 폐지된 것이 당시 기준 99처이며, 보(洑)가 1,339처로서 타 지역에 비해 그 숫자가 많았다.[20]

4. 임업지리; 국가정책으로서의 소나무 관리

국토 곳곳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관리 정책은 당시 나라에서 소나무 재목의 쓰임에 비추어 대단히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자라는 산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는 봉산(封山) 정책을 시행하였다. 나라의 궁궐을 축성할 때의 재목으로부터 아래로는 전함(戰艦)과 조선(漕船)의 선박재로 쓰이는 수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곳에 쓰일 재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충분히 자라서 성목이 되도록 길러야 했다. 이런 까닭에 봉산(封山) 정책을 확실히 하여 식목(植木)을 권장하고 벌목(伐木)을 금하며, 일일이 송정(松政)에 관한 시행과 방법 내용을 대전(大典)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목(事目)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삼남과 경기, 관서를 제외한 동, 북, 해서 등 6도는 봉산(封山), 황장(黃腸)봉산, 송전(松田)을 물론하고 대개 소나무를 심는 데 적당한 곳은 모두 그 수효를 헤아려 파악하여 적도록 하였으며, 출입을 통제하고 소나무들을 기르는 방법과 절차에도 일일이 법도를 두었다.

숙종 10년(1684)에 이러한 기르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절목(규정)을 특별히 만들어서 여러 도(道)에 반포 공시하고 정조 12년(1788)에 고쳐 만들어서 반포 시행토록 한바 있다.

만기요람 재용편의 송정(松政)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표2〉에 의하면 봉산(封山)이 가장 많은 곳은 삼남지방과 경기, 관서를 제외한 전국 6도 325처 중 전라도 지방이 142처로 가장 많고, 황장(黃腸) 봉산은 6도 60처 가운데 강원도 지방이 가장 많아 43처, 송전(松田)은 6도 293처 가운데 경상도 지방이 가장 많아 264처이다. 봉산(封山)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은 6도 가운데 가장 북쪽의 함경도 지방뿐이다. 박봉우는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대동지지(大東地誌)'에 나타난 전국의 봉산을 일람표로 작성하였는데, 분석결과 황장봉산은 강원도가 전국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봉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여기서 황장(黃腸) 봉산(封山)이란 토종 소나무의 일종으로서 속의 심재 부분이 누런 황색을 띠는 소나무에 대한 봉산정책을 말한다. 특별히 이러한 황장목

표 2. 각 도(道)의 봉산(封山), 황장(黃腸), 송전(松田) 분포

분류 / 지역	봉산(封山)	황장(黃腸)	송전(松田)
충청도	73처	–	–
전라도	142처	3처	–
경상도	65처	14처	264처
황해도	2처	–	–
강원도	43처	43처	–
함경도	–	–	29처
계 6도	325처	60처	293처

주) 국역 만기요람(민족문화추진회, 1982, p.499.), 필자 재구성.강원도의 봉산(封山) 43처는 모두 황장목(黃腸木)의 봉산임을 의미한다.

은 재질이 강하고 곧게 자라며 키도 커서 재목으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소나무였다. 이러한 황장목 토종 소나무에 대해 일명 '춘양목' 또는 '금강송'이라고도 한다(손용택, 2005, p.449). 이러한 황장목 소나무는 강원도 일대와 경상도 내륙의 산간에서 잘 자랐다.[23] '춘양목'이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과 소천면 일대에서 집산 반출되던 황장목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24] 재목의 가치가 출중한 황장목의 생산지로는 당시에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이었음을 만기요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전통의 맥을 오늘날에도 이으려 하고 있으며, 특히 봉화군 일대에서는 춘양목 즉 황장목을 되살려 내고 전통을 잇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손용택, 1995, pp.453-457).

한편, 만기요람에 저명한 송산(松山)으로는 호서(충청)의 안면도가 있고, 호남에는 변산, 완도, 고돌산, 팔영산, 금오도, 절이도(折爾島)가 있으며, 영남의 남해, 거제가 있다. 해서의 순위(巡威), 장산(長山), 관동의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이 있고, 관북의 칠보산이 유명하다. 이들 지역들은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일찍이 유명해진 곳들이지만 점차 소나무가 많이 사라져 전과 같지 못하며, 각 처의 소나무가 잘 되는 산으로 일컫는 곳 까지도 간간히 소수 그루의 나무들도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장흥의 천관산(天冠山)은 곧 원나라의 세조(世祖)가 왜(倭)를 칠 때에 배를 만들던 곳인데, 지금은 그와 같은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나무들을 쉽게 볼 수 없게 되었다. 만기요람 재용편 송정(松政) 내용에 보면, "대체로 소나무는 백년을 기른 것이 아니면 동량(棟梁)이 될 수 없는데, 도벌하는 자가 한갈에 다 없애서 한번 도벌한 뒤에는 다시 계속할 수 없게 되니, 기르기 어려운 것과 취하기 쉬운 것이 너무 대조적이다. 재목의 쓰임이 날로 궤갈(匱竭)하여 수십 년을 지나면 궁실, 전함, 조선(漕船)의 재목을 취할 곳이 없으므로 식자는 이를 근심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침이 전혀 없어 만세지탄의 감이 있다.

5. 상업지리; 다양한 장시(場市)의 개설

만기요람 재용편에는 당시 각종 장시(場市)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그 기능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육의전(六矣廛)과 난전(亂廛) 및 이들 장시의 질서를 잡는 평시서(平市署), 국경지대에 연중 2회 또는 격년으로 개설되었던 중강개시(中江開市)와 북관개시(北關開市) 등 여러 장시(場市)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육의전(六矣廛)과 난전(亂廛), 평시서(平市署)

임금이 거처하는 왕도(王都)의 제도는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을 두어 좌묘우사(左廟右社)를 갖추고, 앞쪽에는 궁궐(조정)을 두고, 뒤쪽에 시장(시전)의 자리를 앉혔는데, 이른바 전조후시(前朝後市)가 이것이다. 시전은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가(公家)의 수요에도 필요 물품을 조달해 주는 근본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朝廷)의 입장에서 중히 여기는 기능이었다.

육의전(六矣廛)이란 당시 서울인 한성부(漢城府)에 설치한 여섯 가지 전문 물품을 취급하는 시전(市廛)을 말한다. 한성부 성내에 앉아서 상행위를 하는 각 전(各廛)은 조정(朝廷)과 관사(官司)의 물품 조달과 서민들의 생필품 조달의 역할을 한다. 육의전은 일찍이 태종(太宗) 때 행랑(行廊)[25] 건축과 함께 그 정비를 시행한 바 있었다. 큰 시전이 여섯 개가 있었는데, 선전(線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등이 있었다.[26] 이들 육의전의 상인들은 조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상행위를 하며, 시전 세(市廛稅)는 상행위를 위해 벌려 놓은 행랑의 칸 수(間數)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여러 가지 시전(市廛)은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정해져 있고, 도회지 주민들의 생업과도 직결되어 있으므

로 각 전(廛)의 물품들은 시전 상인들이 아니고서는 사사로이 매매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를 어기는 자는 법사(法司)에서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난전(亂廛)이란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를 일컬었다.[27]

조정에서는 상인들이 각 전(各廛)이나 장시(場市)와 향시(鄕市)[28]에서 물품을 거래하는데 있어 도량형을 속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 관사(官司)를 두었는데, 이를 평시서(平市署)라 하였다. 평시서는 태조 6년에 창설하여 경시서(京市署)라 명명하였다가 세조 12년에 평시서로 바꾸었다. 평시서에서는 자, 말, 저울 같은 도량형을 변조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제사범을 단속하였고 물건 값의 높고 낮음을 검사하는 기능의 관아(官衙)였다. 도량형은 관에서만 제조한 것만 사용하여야 하며, 도량형을 변조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자는 장(杖) 70의 형(刑)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29]

2) 중강개시(中江開市), 책문후시(柵門後市), 북관개시(北關開市)

중강개시(中江開市)는 압록강 하구의 한 섬에 청나라와 교역하던 무역 중개 장소를 말한다. 중강개시는 설치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불린다. 조선왕조 인조 때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가리켜 중강후시(中江後市)라 일컬었다(延正悅, 1996, p.468). 그리고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명나라와 교역을 하였었는데, 이를 중강전시(中江前市)라 불렀다.

선조 26년(1592)에 국내에 기근이 들었고, 당시 재상이었던 유 성룡(柳成龍)이 건의하여 변경지역인 압록강의 중강(中江)에 시(市)를 열어 교역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중강전시(中江前市)로서 중강개시의 시초가 된다.[30] 선조 34년(1601년)에 이르러 많은 폐단이 잇달아 나타나므로 없애기로 하였다가 명나라의 관아인 무원(撫院)에서만 열도록 허락하였다. 다음해에 명나라 환관인 고양(高洋)이 복구할 것을 청하므로 의주에 명령하여 전과 같이 매매하도록 하였다가 광해군 기유(1609년)에 다시 폐지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국경시장에서의 교역에 따른 수익이 내수시장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관허의 교역업자들 외에도 일반 민간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불법적인 방법 등으로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폐단이 심심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31] 인조 24년(1646년)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설치하였는데, 이를 중강후시(中江後市)라 하며, 3월과 9월 15일의 2회에 걸쳐 교역하도록 정하였다가 2월과 8월로 개정하였다.

초기에는 엄격했던 협약 규정도 점차 해이해져서 그 개시 시기 일정이 연장되었다. 국법으로 금하여 일반 상인들이 시장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일체 허락되지 않았으나 점차 해이해져서 민간 상인들이 함부로 따라가서 저희 마음대로 교역하였다. 중강후시의 정황은 대개 이러하였으며 나중에 책문(柵門) 후시가 점점 성하여짐에 따라 사행(使行)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상인이 화물을 휴대하고 시장에 따라 들어가니 청나라 상인들은 앉아서 이익을 보았고, 그들이 화물을 싣고 오는 일은 없어졌다.

중강개시에서 거래되는 교역물품 종류는 다양했다. 소, 다시마, 해삼, 면포와 포, 백지와 장지, 소금, 보습, 사기(沙器) 등속이었는데, 물건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것이 액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은 이들 물건들을 가져가서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두 은(銀)으로 값을 회계하여 소청포(小靑布) 1필을 은 3돈 5푼에 준하는 것으로 취하게 하였다. 소청포는 품질이 좋지 않으며 짧고 좁아서 효용성이 떨어졌다.[32] 우리의 유용한 재화를 가져다가 청나라의 무용한 물건과 교역하는 셈이므로, 비록 명목상으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외국과의 교역이라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실은 우리 측에게는 별 이익이 없는 일이었다.

숙종 26년(1700년)에 예부에서 중강후시를 없앴지만, 책문후시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당시 요동(遼東)과 봉성(鳳城)의 12인이 연행사절 일행의 물자를

도맡아 대는 상인이라 칭하고,[33] 관동지방의 탐관오리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하여 청나라에 납세하기를 자원하고 화물을 많이 운수하였다. 사행들이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만상과 송도 상인 등이 은과 삼을 몰래 가지고 부마(夫馬)속에 섞여들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 모리하였다. 돌아올 때에는 수레 마차 등 움직이는 행렬을 더디게 한 후 사신일행을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마음껏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 후시(柵門後市)라고 하였다.

세폐방물(歲幣方物)을 교부한 뒤에 돌아오는 인마(人馬)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단련사(團練使)를 차송하여 외람되고 못된 짓들을 금하도록 하였었다. 그 뒤 단련사가 도리어 상고(商賈)의 두령이 되어 뒤에 쳐져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마음껏 매매하여 돌아오는 말 편에 싣고 돌아왔다. 이를 단련사후시(團練使後市)라고 불렀다. 단련사는 정조 13년(1789년)에 없애고 방물은 책문에서 고거(雇車)로 운반하였었는데, 순조 6년(1806년)에 임금께 청하여 본국에서 진공(進貢)하는 차량이 책문에 도착한 뒤에는 봉황성의 수위가 대신 감찰할 것을 허하고 우리 측에게는 값을 출급하여 따르지 못하게 하였다.

북관개시(北關開市)란 회령개시(會寧開市)와 경원개시(慶源開市) 등 두 곳의 개시를 말한다. 회령개시는 청 태종 연간에 청나라의 영고탑(寧古塔) 및 오라(烏喇) 두 곳의 사람들이 호부의 표문(票文)을 지참하고 농우(農牛), 농기(農器), 식염(食鹽)을 가지고 회령(會寧)에 들어와서 교역을 하게 되어 해마다 두 나라 상인 간에 교역을 하기위해 열게 된 개시(開市)이다.[34] 북경(北京) 예부에서는 두호자문(頭戶咨文)을 파송하였고, 시(市)를 끝낸 뒤 우리나라에서는 완시자문(完市咨文)이 있었다. 차관(差官)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차사원(差使員)이 지방관과 아울러 객관(客館)에서 감시(監市)하였다.[35]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함경도 경원(慶源)에도 이와 같은 개시가 열려 경원개시(慶源開市)라고 하였다. 경원개시는 격년으로 열렸으며, 청나라 상인들은 소와 보습, 솥 등 철제품을 가지고 와서 교역을 하였다. 차관(差官)을 기다려서 감시(監市)하였고, 완시자문은 회령의 방식과 같다.[36]

청(淸)의 순치연간(順治年間)에는 회령과 경원에 교역하러 온 자들이 594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 소, 낙타 등의 가축이 1,144필에 달하여 꼴과 양식의 공급을 백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37] 개시한 초기에는 인축(人畜)의 수가 15~16에 지나지 않고 교역하면 곧 떠나던 것이 차차 양측의 사람이 서로 재화를 탐하여 폐단이 일면서 인축이 1,000에 가깝고, 낙타, 노새는 더욱 많았으며, 80~90일 까지도 체류하게 되니,[38] 그 교역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관개시가 열린 틈을 타서 외국인에게 조선의 경제동향이나 그 밖에 조선의 실정을 누설하는 자가 적발되면 죄를 물어 처벌하였다.[39] 북관개시에서 청나라 화폐는 관의 허가를 받은 관원이나 무역상만 소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다.

3) 향시(鄕市)

지방에서 개시(開市)하는 것은 한 달에 6회 장(場)으로서, 1 · 6일, 2 · 7일, 3 · 8일, 4 · 9일, 5 · 10일 장(場)이 일반적이고, 송도는 시법(市法)을 서울과 같이 하였다.

각 지역별 향시가 열리는 장소의 수는 경기 102처, 충청도가 157처, 강원도 68처, 황해도 82처, 전라도 214처, 경상도 276처, 평안도 134처, 함경도 28처 등이다.[40] 이들 전국에서 열리는 향시 가운데 경기도 광주 사평장(廣州沙坪場), 송파장(松坡場), 안성 읍내장(安城邑內場), 교하 공릉장(交河恭陵場), 충청도의 은진 강경장(恩津江京場), 직산 덕평장(稷山德坪場), 전라도의 전주 읍내장(全州邑內場), 남원 읍내장, 강원도의 평창 대화장(平昌大化場), 황해도의 토산 비천장(兎山飛川場), 황주 읍내장(黃州邑內場), 봉산 은파장(鳳山銀波場), 경상도의 창원 마산포장(昌原馬山浦場), 평안도의 박천 진두장(博川津頭場), 함경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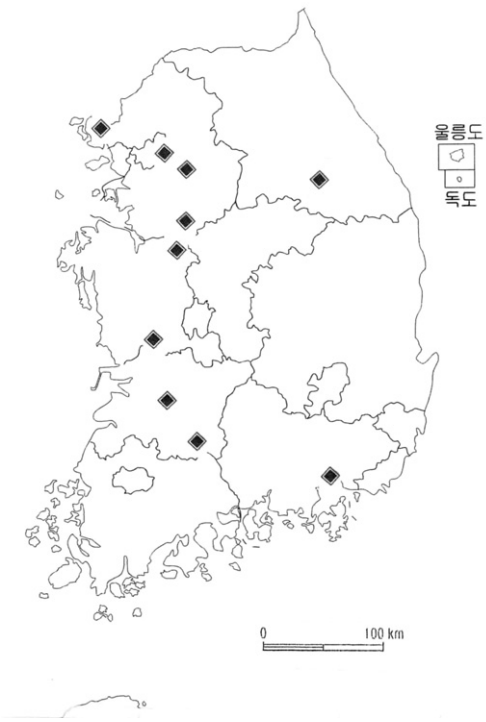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시대 후기의 유명 향시(鄕市) 분포.(중부 이남)

덕원 원산장(德源元山場) 등이 당시의 크고 유명한 장(場)들이다.[41]

6. 교통지리; 조창(漕倉)의 설치와 분포

일반적으로 조운(漕運)이라 함은 교통수단과 화폐경제가 미발달하였던 시대에 있어서 조세(租稅)를 선박으로 해상 혹은 하천을 통하여 왕도(王都)로 수송하여 상납하는 운송체계를 말한다.[42] 조세(租稅)를 선박으로 운반하여 서울에 상납하는 것을 조(漕)라고 불렀다. 조세로 징수한 전곡(錢穀)을 선박으로 운반하여 서울에 상납하는 것을 조전(漕轉)이라 일컫는다.

조세를 거두기 위해 삼남에는 조창(漕倉)을 설치하고 상류에는 수참(水站)을 배치하여 조박(漕舶)은 바다의 길로 이르게 되며, 참선(站船)은 강을 따라 내려오게 된다. 조(漕)에 부속된 읍과 참(站)에 부속된 읍이 각각 있으되, 길과 마을이 우회하고 궁벽하여 조와 참에 부속되지 아니한 곳은 임선(賃船)을 사용하여 스스로 납부토록 했다. 이렇게 하면 전국 모든 지방의 조세와 조전이 모두 한데 모이게 되어 상통하게 된다. 창(倉)이 있는 곳에 각각의 부속된 읍이 있게 되므로 창(倉)은 반드시 바다를 낀 항구에 설치하여 모든 읍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른바 육로이던 해로이던 접근성이 양호한 중심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입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선박을 정박시키는 항구는 늘 소통에 편리하도록 정리 정돈이 되도록 하였다. 선박의 정박시설물과 선박수리에 따르는 각 장비와 관련 기계 및 부품을 수선하고, 사공과 격군들을 훈련시켜 물자와 식량 등이 제 때에 닿도록 하였다. 매년 초봄에 호조에서 서울에 상납하도록 하는 사목(事目)을 갖추어 국왕의 재가를 받아 조정의 명령을 알리면, 각 읍의 수령들은 기한 내에 곡물을 받아서 소속된 창(倉)에 납부하고, 중요한 사무로 임시 파견된 차사원(差使員)은 거두어들이는 것을 감독하여 싣고, 배편을 이용해 영납(領納)하였다. 조세와 조전을 운반하는 선편이 서울 근처의 경강(京江)에 도착해 정박하면 호조(戶曹)의 당랑(堂郎)이 나가서 점검하고 각 창(倉)으로 나누어 적재시켰다.[43] 대체로 일련의 과정이 이러하였고, 구체적으로 지역별 조창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전라도에는 다음의 세 군데에 조창을 두었다. 성당창(聖堂倉)은 함열(咸悅)에 두었다. 세종 10년(1428)에 설치하였으며, 조선(漕船) 14척 규모에 8읍의 전세(田稅)와 쌀, 면화 등을 싣는데 군산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영납하였다. 정조 15년(1791)에 관찰사의 청에 의하여 함열 현감으로 하여금 감봉(監捧)하여 영납토록 하였다.[44] 군산창(群山倉)은 옥구(沃溝)에 두었다. 군산창은 성종 18년(1487)에 설치하였으며, 조선(漕船) 23척을 거느리는 규모이며, 7읍의 전세(田稅) 및 대동미를 싣는데 군산의 첨절제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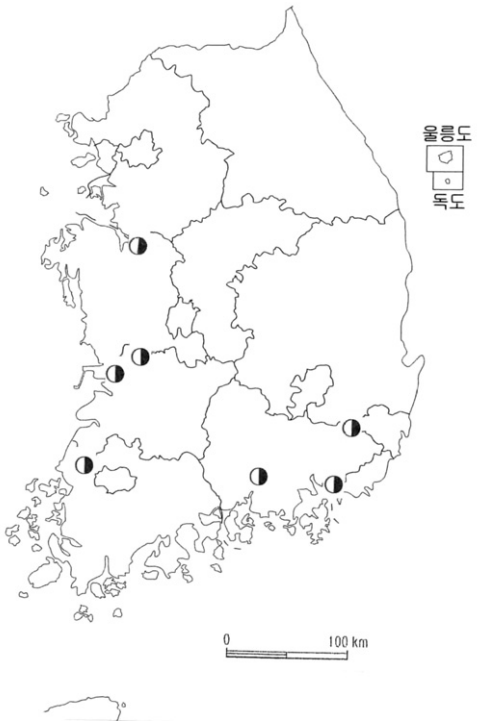

그림 3. 15~16세기의 조창(漕倉)의 분포

감봉 영납하였다.[45] 법성창(法聖倉)은 중종 7년(1512)에 영광에 설치하였다. 조선(漕船) 29척 규모에, 12읍 1진(鎭)[46]의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싣는데 법성첨사가 감봉하여 영납 하였다.

한편, 충청도(당시는 公忠道)에는 아산에 공진창(公津倉)을 두었다. 중종 18년(1523)에 설치하였으며 조선(漕船) 15척을 두었고, 7읍[47]의 전세(田稅)를 실어 부근의 첨사, 만호, 권관이 영납하였다. 영조 38년(1762)에 아산 현감으로 하여금 감봉 영납토록 하였다. 이상의 성당창, 군산창, 법성창, 공진창은 호조에서 관리하였다.

경상도에는 좌우 조창과 삼랑창 등 세 곳에 조창을 두었다. 마산창(馬山倉)은 창원(昌原)에 두었으며 좌창(左倉)이 된다. 조선(漕船) 20척의 규모이고, 8읍[48]의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싣되 창원 부사(府使)가 감봉하고, 구산 첨사가 영납하였다. 견내량에 속창(屬倉)을 두었는데 고성과 거제 두 읍의 곡물을 봉제(捧載)하기 위한 것이다. 영을 받들어 운송하는 차원(差員)이 감봉하여 원창(元倉)의 곡물을 싣고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함께 싣고 떠나게 했다. 가산창(駕山倉)은 진주에 있으며 우창(右倉)의 역할을 한다. 조선(漕船) 20척의 규모이다. 8읍[49]의 전세와 대동미를 싣는데 진주목사가 감봉하며 적량 첨사가 영납하였다. 삼랑창(三浪倉)은 밀양에 있었으므로 후창(後倉)이 된다. 조선(漕船) 15척의 규모이다. 6읍[50]의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싣는데 밀양부사가 감봉하고 제포 만호(薺浦萬戶)가 영납하였다. 이상의 세 곳 조창(漕倉)은 당시 선혜청(宣惠廳)이 관리하였는데,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동미였기 때문이다.

조창(漕倉)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경상도의 마산창과 가산창 설치에 따른 당시의 어려움이 컸음을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남 연안 지방의 세곡상납 방법을 조선(漕船)으로 변통한 후에 창원에 마산창, 진주에 가산창 등 두 조창을 두었다. 양창(兩倉)의 행랑 수를 합하여 모두 300여 간(間)이나 되고, 부족한 조선(漕船)의 수가 13척이나 되며, 지토선(地土船)으로 사용기한이 차거나 부서져 손상된 것도 개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들어갈 재목을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조창(漕倉)을 짓고 선박을 새로 만들거나 개조 수리하는데 필요한 재목을 통영(統營)소관의 봉산(封山) 중에서, 바람에 쓰러져 저절로 고목이 된 풍락굴곡송(風落屈曲松)일지언정 베어내어 쓸 것을 허락해 주도록 묘당(廟堂)에서 임금께 아뢰어 달라고 했으니,[51] 그 사정의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00여 간(間)이 넘는 두 곳 조창(漕倉)의 건립과 13척이나 모자라는 선박을 새로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양의 물력이 소요될 것이었으며, 더욱이 재목을 자체 조달하기는 더욱 어려움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7. 요약 및 맺음

만기요람의 재용편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재정 또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군주를 위한 통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기요람은 제왕의 하교(下敎)와 교지(敎旨)의 초를 잡을 때에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었다.

군왕으로서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틀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왕의 좌우에 두고 국정에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 만기요람이다. 이 책은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국정운용 지침서로서 엮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재용편을 통해서는 당시의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엮어져 만들어진 만기요람 재용편 곳곳에 지리적인 중요 정보들이 등장한다.

첫째, 만기요람 재용편에서도 다룬 것처럼 금과은, 구리, 납과 같은 주요 귀금속 및 금속자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이 컸던 금속들임을 알 수 있다. 처음 금은 자산(慈山), 강화의 남면(南面), 성천(成川), 수안(遂安) 등지에서 약간씩 채취되다가 19세기 초에 와서 경기지방, 호서지방, 관서와 해서지방, 관동지방, 관북지방 등의 6도에 금맥의 발굴이 점점 성하여 개발이 활발해졌으나 여러 가지 민폐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조정에서 철폐토록 하였다. 금의 분류는 최상을 '10품금' 또는 '엽자금(葉子金)'이라 하며 제련하였으되 정하지 못한 것을 '괴금(塊金)', 제련하지 아니한 것을 '쇄생금(碎生金)'이라 하였다.

은(銀)은 귀히 여겨 국외 반출에 엄격한 면이 있었다. 단천에서 처음 은을 캐고 파주, 교하, 곡산, 춘천, 공주 등지에 은점을 설치하는 등 68개 읍에 이르다가 은맥의 쇠잔함이 심해지고, 세금 납부의 부담, 은점의 관리 등 서민들의 고충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정조 무오년에 이르러 은점(銀店) 신설을 금지하였다. 당시 은(銀)은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천은(天銀), 지은(地銀), 현은(玄銀), 황은(黃銀)로 분류되었다. 천은(天銀)은 임금께서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때 쓰이고, 지은(地銀)은 칙사 대접의 예단용으로, 현은(玄銀)과 황은(黃銀)은 제반 경용(經用)에 사용하여 각기 용처를 달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리는 산출되었지만 제련법을 몰라 소비되는 양의 대부분을 왜동(倭銅)에 의존하였다. 구리의 생산은 수안(遂安)과 영월, 보은, 안변 등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제련한 동(銅)의 품질이 왜동(倭銅)에 미치지 못해 활용이 저조했다. 연(鉛)은 은과 함께 생산되어 은(銀)은 호조에 상납하고, 연(鉛)은 그 세수(稅收)되는 액수를 계산해 각 군문(軍門)에서 사용하였다.

금과 은의 활용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귀히 여겨지는 귀금속이다. 구리 또한 특수강의 합금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금속이며 납 역시 그 용도가 특수하여 고금을 막론하고 중요시 되는 금속임을 알 수 있다.

둘째, 19세기 초 조선왕조 후기 곡물의 총량은 약 1천 만석에 달했다. 해마다 일정치 않은 농산물의 작황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므로 춘궁기에 주민들에게 곡식을 꾸어주었다가 그해 가을 추수기에 받아들여 주민들의 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총(還摠) 제도로 이를 다스렸다. 조정에서는 풍년에 비싼 값에 미곡 따위를 사들여 보관해 두었다가 흉년에 싼 값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정부의 고미가(高米價) 정책의 기본원리와 일맥 상통하는 바 있다.

셋째, 19세기 초의 기록에 의하면 밭(63.7%)이 논보다 많았다. 전국 밭 면적 가운데 영남지방이 20% 이상, 호서(17.4%)와 호남(17.%) 지방이 다음을 잇는다. 관동지방의 밭 면적은 전국 대비 3.6% 에 머물러 당시 경지 개발이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36.3%에 불과하다. 호남지방은 전국적으로 논이 가장 많은 지방인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논이 밭보다 많은 지역이다. 논의 비율은 호남에 이어 영남과 호서 지방이 뒤를 잇는다. 논밭을 합친 경지면적 전체로 보면 호남(23.3%),

영남(23.1%), 호서(17.6%)의 순이다. 당시에도 이들 세 지방이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연행사신(燕行使臣)들은 의주근처의 압록강 책문을 통해 연경에 드나들었으며, 지정통화인 은(銀)의 사용을 통제하고 대신 인삼 10근 8포씩의 1인당 상한선을 두어 노자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를 어겼을 경우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했음은 물론 압록강 책문을 지키는 총책임자인 의주부윤의 책임을 물어 파직시킬 정도로 엄했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의 인삼은 당시 청나라 연경에서 매우 인기품목임을 알 수 있고, 지정통화인 은의 사용을 금한 것은 국내생산이 원활하지 못한 은(銀)의 국고(國庫) 반출을 금했던 당시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넷째, 만기요람 재용편의 송정(松政)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道)의 봉산(封山), 황장(黃腸)봉산, 송전(松田) 분포를 보면 봉산(封山)이 가장 많은 곳은 전국 6도 325처 중 전라도 지방이 142처로 가장 많고, 황장(黃腸) 봉산은 6도 60처 가운데 강원도 지방이 가장 많아 43처, 송전(松田)은 6도 293처 가운데 경상도 지방이 가장 많아 264처이다. 봉산(封山)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은 6도 가운데 한성부로부터 가장 먼 북쪽의 함경도 지방뿐이다. 특별히 황장목(黃腸木)은 토종 소나무의 일종으로서 속의 심재 부분이 누런 황색을 띠는 소나무이다. 재질이 강하고 곧게 자라며 키도 커서 재목으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소나무로 일명 '춘양목' 또는 '금강송'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강원도 일대와 경상도 내륙의 산간에서 잘 자랐다.

다섯째, 만기요람 재용편에 다양한 장시의 기능과 중요성을 다루었다. 육의전(六矣廛)과 난전(亂廛), 장시의 질서를 잡는 평시서(平市暑), 국경지대에 중강개시(中江開市)와 북방개시(北方開市) 등을 언급하였다. 육의전이란 선전(綿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등이며 상인들은 조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시전세(市廛稅)의 기준은 행랑이 차지한 칸 수(間數)의 비율에 따랐다. 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가 각전(各廛)의 취급물품을 사사로이 거래하는 가게를 난전(亂廛)이라 한다. 평시서(平市署)에서는 말, 자, 저울 같은 도량형을 변조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제사범을 단속하였다. 중강개시(中江開市)는 압록강 변경의 일정지역에서 청나라와 교역하던 무역 중개지를 말한다. 이를 중강후시(中江後市)라 하고,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명나라와의 교역을 중강전시(中江前市)라 한다. 북관개시란 회령개시(會寧開市)와 경원개시(慶源開市)를 말한다. 회령개시는 청 태종 연간에 청나라 사람들이 농우(農牛), 농기(農器), 식염(食鹽)을 가지고 회령(會寧)에 들어와서 교역을 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해 함경도 경원(慶源)에도 경원개시(慶源開市)가 격년으로 열렸으며, 청나라 상인들은 소와 함께 보습, 솥 등 철제품을 가지고 와 교역하였다. 두 곳 개시(開市)에 초기 참가자는 인축(人畜) 15~16에 불과했지만 청(淸)의 순치연간(順治年間)에는 회령과 경원에 크게 늘어 594명이 되었고 말, 소, 낙타 등의 가축이 1,144필에 달하였다.

여섯째, 조운(漕運)은 교통수단과 화폐경제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대에 조세(租稅)를 선박으로 해상 혹은 하천을 통하여 왕도(王都)로 수송하여 상납하는 운송체계이다. 기록을 통해 조창을 설치한 곳의 지리적인 입지특성과 그 분포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전라도에는 세 곳에 조창을 두었다. 함열(咸悅)의 성당 창(聖堂倉)은 관할 읍 8곳을, 옥구의 군산 창(群山倉)은 관할 읍 7곳을, 영광의 법성 창(法聖倉)은 관할 읍 12곳과 1진을 두었다. 충청도에는 조창이 한 곳으로서 아산에 공진 창(公津倉)을 두어 7읍을 관할하였다. 경상도에는 좌우 및 후창 등 세 곳의 조창을 두었는데, 창원의 마산 창(馬山倉)은 좌창으로서 관할 읍이 8곳이며, 견내량에 속창(屬倉)을 두고 고성과 거제 두 읍의 곡물을 봉제(捧載)하였다. 진주의 가산 창(駕山倉)은 우창으로서 8읍을 관리했고. 밀양의 삼랑 창(三浪倉)은 후창(後倉)의 위치이며 6읍을 관리했다. 이들 창(倉)이 있는 곳은 각각의 부속된 읍이 있게 되므로 창(倉)은 공히 바다를 낀 항구지역에 입지하였다. 관할의 모든 읍으로 통하는 육로와 해로의 접근성이 높

은 곳이며, 선박을 정박시키는 항구를 늘 편리하게 정리 정돈하였다.

요컨대, 만기요람 재용 편에는 금속광물 자원으로 금과 은, 구리와 납의 분류와 생산지 성쇠를, 농업지리와 관련해서는 연간 곡물 총생산량과 전답 및 전세(田稅) 부과와 그 기준, 고금을 통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삼에 대해, 그리고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의 분포와 기능 등을, 임업지리와 관련하여 소나무의 정책과 분포에 대한 내용을, 상업지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장시(場市)의 종류와 북쪽 변방의 국경시장의 분포와 규모, 성쇠 등을, 교통지리와 관련하여 조창(漕倉)의 분포와 기능 등 실로 다양한 당시의 지리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들 내용들을 현대 지리적 분류체계와 연결시켜 해석하고, 조명해 볼 때, 나라의 임금이 비망록처럼 좌우 가까이 두고 읽는 책자 속에, 실용적 지리관련 지식과 필요한 정보들이 국왕의 국정운용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체로서 정리되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

1) '만기(萬機)'란 말은 『서경(書經)』皐陶謨 편에 「일일 이일 만기(一日二日萬機)」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기(機)는 미묘한 기틀을 말한 것이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루나 이틀과 같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미묘 복잡한 국정에 대한 만반의 처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기(幾)는 기(機)와 통하는 같은 뜻을 가졌으므로 후세에 내려오면서 만기(萬幾)가 도리어 만기(萬機)로 쓰이게 되어 군주의 정치하는 전용어로서 사서(史書)에 자주 등장한다.『만기요람(萬機要覽)』은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용도라기보다는 국왕이 친히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므로 서명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민족문화추진회, 1982, 고전국역총서67 만기요람 1, p.1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해제)

2) 민족문화추진회, 1982, 고전국역총서67 만기요람 1,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해제, p.1

3) 민족문화추진회, 1982, 고전국역총서67 만기요람 1,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해제, pp.6~7

4) 민족문화추진회, 1982, 고전국역총서67 만기요람 1,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해제,, p.7

5) 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 pp.363-364)

6) 여기서 은점(銀店)이란 채광하여 얻은 은 원료로부터 제련하여 은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수공업적 은제련소를 일컫는다. 그 규모와 취급 량에 따라 세금액을 달리했다.

7) 호조(戶曹)에서 직접 분류하였으므로 호조은(戶曹銀)의 네 가지 분류라고 하였다.

8) 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 pp.364-366)

9) 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 pp.367)

10) 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 pp.366)

11) 純祖 7년(1807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 통계 치이다.

12) 續大典 戶曹 收稅條

13) 영재(永災)란 영구히 재결(災結)로 처리되는 것이며, 재해로 인하여 전지(田地)가 아주 못쓰게 된 경우에 영원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함.(한국고전용어사전,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1241)

14) 연분사목(年分事目)이란 연분(年分)에 대한 규정을 뜻함.

15) '초실(稍實)'이란 '조금 익은 것'의 급을 말한다.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149의 주 재인용).

16) 원단사(元旦使)는 청나라에 대해 새해 인사를 위한 사절단이며, 성절사(聖節使)는 청나라 황제의 탄일에 보내는 사절단이다. 천추사(千秋使)는 청나라 황후 탄일에 인사차 파견하는 사절단이다. 동지사(冬至使)는 한해를 마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절단이다.(延正悅, 1998, 萬機要覽에 관한 一硏究, p.11 재인용)

17) 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령스러운 약초이다. 중국에서도 인삼이 나지만 품질은 우리 것을 따르지 못한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인삼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재배가 고구려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 했던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고시가에 다음과 같은 인삼노래가 있다. "세 갈래 가지마다/ 잎은 다섯 개씩/ 양지를 등지고/ 응달에

서 자라네/ 나를 얻자고/ 오는 사람은/ 자작나무 밑에서 / 찾아보시라(三椏五葉 背陽向陰 欲來求我 樺樹相尋)"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 노래가 고구려 때 불리워졌으며 중국에 널리 유포되었다고 말한다. 자작나무(樺樹)가 잎이 넓고 그늘이 짙은 특성을 가지며 그 밑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까지 고증하여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운기 엮음, 1998, 새로 읽는 한국고시가, 서울; 드림북스, p.130).

18) 萬機要覽 財用篇 5, 燕行八包.(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 재용편, p.555.)

19) 萬機要覽 財用篇 5, 堤堰.(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 p.501)

20) 萬機要覽 財用篇 5, 堤堰.(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 p.502)

21) 수원(水原)에 둑 24처(폐지된 곳 7처), 광주(廣州)는 둑 13처(그 중 폐지된 곳 3처), 강화에는 둑 32처, 경기도는 둑 245처(그 중 폐지된 곳 9처), 전라도 둑 936처(폐지 24처)에 보(洑)는 164처, 충청도(공충도)에 둑 535처(폐지 17처)에 보 497처, 평안도 둑 5처에 보 109처, 황해도 둑 45처(폐지 6처)에 보 71처, 함경도에는 둑 24처(폐지 3처)에 보 24처, 강원도는 둑 71처에 보 61처.(민족문화추진회, 1982, 만기요람1 재용편5, p.503)

22) 辛鍾遠, 1995, 강원도의 禁標 封標, 博物館誌(江原大學校博物館), 第2號,, p.55에서 재인용.('속대전(續大典, 1786)' 의 분석결과는 전국 32곳 중 강원도가 22곳,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 의 경우는 43곳, '대동지지(大東地誌, 1864)' 는 전국 41곳 중 강원도 32곳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23) 강원도의 황장봉산(黃腸封山) 43처; 금성(金城 4), 양구(3), 인제(3), 횡성(1), 영월(1), 평창(1), 이천(1), 원주(3), 홍천(2), 강릉(3), 고성(1), 양양(2), 정선(1), 회양(淮陽 1), 삼척(6), 낭천(2), 통천(1), 평강(4), 울진(3)(萬機要覽 財用篇 5, 松政)

24) 봉화군 일대에서는 과거에 소나무 경기가 한창 좋을 때에 철도가 신속히 지나는 지름길을 버리고 '춘양읍' 일대를 돌아가도록 철도를 놓아 이 춘양목을 실어 냈으므로 '억지 춘양' 의 어원이 되었다고도 한다.(辛鍾遠, 1995, 강원도의 禁標 · 封標, 博物館誌(江原大學校博物館), 第2號,, p.52; 손용택, 2005, 삼림자원의 시장화 성쇠; 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05, 제8권 제3호, p.448에서 재인용)

25) 조선왕조 제3대 태종 때 서울 큰 거리 양쪽에 세운 상점가.(延正悅, 1998, 萬機要覽에 관한 一硏究, p.10 각주 재인용)

26) 선전(綵廛) - 비단을 파는 시전(市廛); 면포전(綿布廛) - 무명을 파는 시전; 면주전(綿紬廛) - 명주를 파는 시전; 지전(紙廛) - 종이를 파는 시전; 저포전(苧布廛) - 모시포(苧布)만을 파는 시전. 베를 주로 파는 포전(布廛)이 별도로 있었으나 합해짐;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 내어물전은 종로에 자리잡고 있는 어물전이고, 외어물전은 서소문 밖에 모여 있는 어물을 파는 전이었으나 두 전은 순조 원년에 합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중국 및 외국의 화포(花布)와 청포(靑布) 및 홍포(紅布) 등과 전(氈), 담욕(毯褥), 담모자(毯帽子) 등을 전문으로 파는 청포전(靑布廛)이 있었으나 내어물전과 아울러 주비가 되었다가 정조 18년에 주비전의 자격을 잃었다.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p.491~492의 주해 인용)

27)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493.

28) 향시는 당시 지방에서 3~5일 간격으로 서는 장을 말한다.

29) 大明律 戶律 市廛 私造○斗稱尺條에 ....若官降不如法者杖七十이라고 밝히고 있다.

30) 당시 국내의 물가는 무명 1필 값이 겉곡식 1말 값도 되지 않았지만, 중강에 선 시장에서는 쌀 20여 두에 상당하였다. 은이나 구리, 무쇠로 교역하는 자는 10배의 이익을 챙기게 되므로 요동지방의 미곡이 우리나라에 많이 반입되어 생활을 온전히 하는 자가 많았다.(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563쪽)

31) 이 중강개시(中江開市)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는 관의 허가를 받은 관허(官許) 무역업자였다.(延正悅, 1996, 新訂增補版 韓國法制史, p.469; 延正悅, 1998, 萬機要覽에 관한 一硏究, p.12에서 재인용)

32)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564.(中江開市公買賣總數)

33) 이들을 '난두(欄頭)' 라 칭했다.

34) 자년(子年), 인년(寅年), 진년(辰年), 오년(午年), 신년(申年), 술년(戌年)은 단개시(單開市)라 하고, 축년(丑年), 묘년(卯年), 사년(巳年), 미년(未年), 유년(酉年), 해년(亥年)은 쌍개시(雙開市)라 한다.

35)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570
36)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571
37) 萬機要覽 財用篇 5, 中江開市 總例條.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571.)
38)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만기요람1 재용편, p.572
39) 續大典 刑典 禁制條.(延正悅, 1998, 萬機要覽에 관한 一硏究, p.12에서 재인용)
40) 길주의 이북 삼갑(三甲) 각 읍에는 본래 장시(場市)가 없고 여염간(閭閻間)에서 평상일에 매매하였다.
41) 萬機要覽 財用篇 5, 各廛 · 鄕市
42) 萬機要覽 財用篇 2 漕轉條에 "租稅之舟運 而納于京師謂之漕"라 하였다. 엄밀하게는 바닷길을 통해 운반하는 해운과 하천을 따라 운반하는 수운으로 구별된다. 조운(漕運)은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운만을 조운이라 하고, 수운은 달리 참운(站運)이라 하여 별도 구분하기도 하였다.(延正悅, 1998, 萬機要覽에 관한 一硏究, p.1 각주 재인용)
43) 萬機要覽 財用篇 2, 漕轉 · 漕倉
44) 관할 8읍에는 함열, 진산, 운봉, 익산, 고산, 금산, 용담, 남원 등이다.
45) 관할 7읍에는 옥구, 전주, 진안, 장수, 금구, 태인, 임실 등이다.
46) 관할 12읍 1진에는 영광, 광주, 담양, 순창, 옥과, 고창, 화순, 곡성, 동복, 정읍, 창평, 장성, 법성 등이다.
47) 아산, 목천, 연기, 천안, 온양, 전의, 서원(청주) 등이다.
48) 창원, 함안, 칠원, 진해, 거제, 웅천, 의령의 동북면, 고성의 동남면 등이다.
49) 진주, 곤양, 하동, 단성, 남해, 사천과 고성의 서북면, 의령의 서북면 등이다.
50) 밀양, 현풍, 창녕, 영산, 김해, 양산 등이다. 김해는 본래 좌창의 관할이었지만 후창이 만들어지면서 이속하였다.
51) [承政院日記] 第1175冊, 英祖 35年 己卯 11月 20日 丙寅에 다음의 글이 나온다.
漕船變通後 兩漕倉一於晋州之駕山浦 一於昌原之馬山浦 別定差員 今方新設 而兩倉間架 合爲三百餘間 漕船之不足爲十三隻 地土船之限滿與破傷者 亦當改造 而所入材木 無路措辦 統營封山中 設倉之材 以風落屈曲松許斫 漕船新造改造之材 隨其隻手亦爲許斫事 請令廟堂稟處矣

참고문헌

고운기 엮음, 1998, 새로 읽는 한국 고시가, 드림북스, p.130.
민족문화추진회, 1982, 고전국역총서67 만기요람 1.
續大典 戶曹 倉庫條.
손용택, 2005, 삼림자원의 시장화 성쇠; 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3) p.449.
辛鍾遠, 1995, 강원도의 禁標 封標, 博物館誌(江原大學校博物館), 第2號 承政院日記』 第1175冊.
延正悅, 1996, 新訂增補版 韓國法制史, 서울학문사, pp.474-475.
延正悅, 1998, 萬機要覽에 관한 一硏究
黃大錫 · 延正悅 1978, 經營史(韓國經營史槪說), 세영사, p.58.

교신: 손용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고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 전공 (전화: 010-6323-3106)
Correspondence: Yong-taek Sohn,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njungdong Hao hills 110,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791, Korea, Tel; +82-31-709-5761, E-mail: sohn@aks.ac.kr

최초투고일 2009년 5월 8일
최종접수일 2009년 6월 12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2, No.2, 2009(195~214)

Geographical interpretation of the Chapter on Economy in (財用篇) the Mangiyoram

Yong Taek Sohn*

Abstract : The Mangi yoram(『萬機要覽』), a guidebook of state affairs, was published by royal command in the late Joseon period. Its chapters on financial affairs(財用篇) are particularly remarkable, as they explain on all aspects of the national finance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a clear manner. The financial part of the Mangi yoram includes metallic mineral resources, such as the location of gold, silver, copper, lead deposits and the prosperity and decline of the mines, and the various uses of each of the minerals. These are still regarded as valuable resources. Its contents on agricultural geography comprise not only the total yearly output of grains, paddyfields and dryfields, their taxation and standards of taxation, but also ginseng which was famous in the outside world in the pre-modern era. The book also clearly explains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dikes for irrigation and their functions. The book also contains information on forestry geography, e.g. the varieties of pine trees and their distribution and mountain containment policies. Contents related to commercial geography consist of material on different types of markets such as the yukuijeon(六矣廛), sijeon(市廛), peongsisuh(平市署), nanjeon(亂廛), and the distribution, size and prosperity and decline of the border markets of the northern frontier such as the hoeryungkaesi(會寧開市) and geongwonkaesi(慶源開市). Contents related to transport geography are the distribution and functions of government granaries etc. Obviously, this book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on various aspects of Korean geography.

If we try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book from the framework of modern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chemes, the geographic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book assumes even greater significance. In sum one may conclude that this book, which the king kept by his side, contained useful geography related knowledge and necessary information, and was directly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It exerted immense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 world of Joseon Korea, and was regarded as an invaluable resource.

Keywords : Mangi-yoram(『萬機要覽』), chapters on financial affairs(財用篇), gold and silver, grain and farmland, mountain containment policy, yukuijeon(六矣廛), government granaries.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